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8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의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, 본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달성군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함

2. 제안근거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」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대상 현황

- 시설명 : 달성군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
- 소재지 : 화원읍 비슬로506길 14, 달성중학교 신관동 4층
- 규모 : 전용면적 202.5㎡(61평) 정도

나.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

-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무
 -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, 노무,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
 -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
 -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
 -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
 -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, 알선, 컨설팅, 교육프로그램 운영

- 채용박람회, 취업설명회, 일자리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, 행사 및 홍보 활동의 추진 또는 그에 대한 지원
-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사업

다. 조직 및 구성

구 분	계	센터장	상담사	비 고
인 원	6	1	5	우리군 직업상담사 2명 포함

라. 위탁기간 : 3년(2025 ~ 2028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 공개모집
- 「동 조례」 및 「동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

바. 민간위탁 추진일정

- 2024. 12. : 25년도 본예산 확정
- 2025. 11. : 학교복합화시설 리모델링 공사
- 2025. 1~. : 학교복합화시설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
- 수탁기관 공개모집 : 2025. 1.
- 수탁기관 선정심의 : 2025. 2.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5. 3.
- 민간위탁 운영 시행 : 2025. 5.

※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사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: 붙임 1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
- 「직업안정법」 제4조의2

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

1 기본 검토사항

대상사무	달성군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 운영
민간위탁 추진 목적	○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·위탁하고자 함
위탁근거	○ 법적 근거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
위탁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경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달성군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계획 수립(2024. 8. 5.) ○ 위탁기간: 3년 ○ 위탁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, 노무,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-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-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-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-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, 알선, 컨설팅, 교육프로그램 운영 - 채용박람회, 취업설명회, 일자리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, 행사 및 홍보활동의 추진 또는 그에 대한 지원 ○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직업상담사 1명이 달성 취업안내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으나, 전문성 및 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- 관내 기업지원 및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 인력이 필수 요구됨

<p>적 정 성 검 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내 기업 및 구직자에게 기업지원 및 일자리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이 충분하며, 민간위탁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 ○ 경제적 효율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절한 운영예산 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○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 분야 추진 경력 및 성과 등을 검토하여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수탁기관 선정 ○ 성과 측정의 용이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5에 따라 성과측정 실시 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12조에 따른 지도·감독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
<p>기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없음
<p>수탁기관 선 정 방 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정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름
<p>민 간 위 탁 금 *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 위탁 : 연간 위탁금 예상액 기재 (400,000천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탁기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, 우리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금액 변경 가능함
<p>사 용 료 *수의창출형 위탁시 기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없음
<p>기 대 효 과 및 향 후 계 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지원과 일자리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○ 향후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1. : 수탁기관 공개모집 - 2025. 2. : 수탁기관 선정심의 - 2025. 3. :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 - 2025. 5. : 민간위탁 운영 시행
<p>전 문 가 의 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위탁 심의 결과,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전문 수탁기관에 위탁함이 바람직함

② 시설위탁 시 작성

시설개요	시설명	달성군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		
	소재지	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06길 14, 달성중학교 신관동 4층		
	시설규모	202.5m ²		
	시설용도	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센터		
	준공일자	2025. 상반기(예정)	개원일자	2025. 상반기
	이용대상	관내 기업 및 구직자	수용인원	50
	보유장비	사무가구, PC 등		
위치도				
지역여건	○ 지하철 1호선 화원역 및 설화명곡역과 인접하여 접근성 용이			
현장사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달성군 기업+일자리 지원센터〉</p>			

【중소기업기본법】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【직업안정법】

제4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·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, 직업지도,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·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, 직업지도,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·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(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